



부 산 고 등 법 원

창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창원)2024누1078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최○○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1165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재산세 41,521,520원, 지방교
육세 6,476,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7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분리과세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위 문언 및 분리과세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기부채납하기로 한'은 확정적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최종실시협약 제7조에는 '원고는 ○○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른 공영터미널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경우, 터미널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제한물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로 ○○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한다. 기부채납 이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향후 별도 협의하여 확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정지조건부 기부채납 약정으로서 원고가 그로써 이 사건 토지를 확정적으로 피고에게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가 2024. 4. 19. 원고에게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원고가 2024. 5. 17. 피고에게 기부채납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정지조건이 성취된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이 사건 과



세기준일 이후의 성취로서 그로써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

판사 최○○

판사 서○○